

제 1513 호
1990. 9. 1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 공보관 유 천수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규 칙

제2352호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운영규칙중개정규칙 3

제2353호 서울특별시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3

◎ 훈 령

제711호 서울특별시아파트형공장설치관리요령세부지침 3

◎ 고 시

제30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허가고시 7

제305호 '90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고시 10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842

- 공 고
 - 제504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10
 - 제505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10
- 구 고 시
 - 제23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지적승인(양천) 11
 - 제57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변경인가(구로) 12
 - 제59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변경인가(구로) 13
- 구 공 고
 - 제67호 주택자재 생산업자등록취소공고(강남) 14
- 사업소고시
 - 제25호 하천의점용허가 14
 - 제26호 하천의점용허가 15
 - 제27호 하천의점용허가기간연장 15
- 사 령

규 칙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운영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9. 6

서울특별시장 고건 ㉞

◎서울특별시규칙제2352호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운영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운영규칙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㉟ 1월미만 입주자 발생시 1월미만 거주자
는 거주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되 산출
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6호 서식> 임대계약서중 제3조 제1항
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임대료는 임대차 개시일(임대차 개시일
은 "입주 지정일"로 한다)로부터 계산하되
1월 미만 거주자가 발생시 1월미만 거주자
는 거주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1호 서식"내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 서식"내지 "별지 제11호 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중 본적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시행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9. 6

서울특별시장 고건 ㉞

◎서울특별시규칙제2353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
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
8호서식>중 "본적"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아파트형 공장설치·관리요령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9. 7

서울특별시장 고건 ㉞

◎서울특별시훈령제711호

서울특별시아파트형공장설치·관리요령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공부 고시제90-16
호(이하 "고시"라한다)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절차) ①아파트형공장을 신·
증설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p>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허가신청서에 고시제4조 또는 제11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소재지 관할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설치의 필요성, 사업내용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한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경유, 상공부장관에게 설치지역 지정에 관하여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제3조(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①고시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을 아파트형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장의 주위여건, 건물의구조, 설비, 안전에 관한 사항등을 조사하여 공장설치 기준에 적합여부를 종합 검토한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설치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p> <p>②아파트형 공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 설치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설치완료 보고를 하고, 구청장은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p> <p>제4조(아파트형 공장의 공급방법 및 가격) ①설치자는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임대, 분양, 혼합방식 그리고 일반, 특별, 단체 등 공급방법과 입주업종을 정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②분양(임대) 시기는 공사착공 전, 후 공장건설추진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자가 정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p> <p>③아파트형공장의 공급가격은 설치자가 시장, 구청장인 경우에는 당해공장 건설시 소요된 원가로 분양 또는 임대하고 설치자가 고시제2조 제2호자목에 해당되는 일반분양목적의 경우에는 당해공장 건설시 소요된</p>	<p>원가에 이윤을 가산한 적정가격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후 분양하여야 한다.</p> <p>제5조(입주제한및 우선순위 부여등) ①설치자는 고시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 공장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입지에 대해서는 공장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음, 진동등이 심하고 생산및 취급물품의 중방, 부피가 과다하거나 위험물 취급업종으로서 아파트형 공장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2.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장을 분양 받았던 사실이 있는자는 시장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장을 재분양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p>②설치자는 고시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기준 이외에 다음과 같이 입주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파트형 공장설치 관할구청 관내에 소재하는 공장, 인접지역 구청관내 소재공장 2. 영구 임대주택 단지내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내의 저소득 시민층의 취업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장은 주변 유휴 노동력 이용도가 높은 업종이 우선 <p>③설치자가 특수사업 목적으로 설치한 공장은 당해 목적사업에 적합한 공장으로 한층 날 수 있다.</p> <p>제6조(입주자의 모집) ①입주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용모자중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되 동일 여건일 경우 추첨에 의한다.</p> <p>②설치자는 10%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확정된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신청한 자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하지 못하는자가 발생되는 경우에 예비 입주자를 우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p>
--	--

제7조(아파트형 공장의 전매행위등의 제한)

①설치자가 분양공급한 아파트형 공장은 당해공장을 최초로 공급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 아파트형 공장은 타인에게 이를 전매할 수 없다.

②임주 확정자가 임주전 불가피한 사유로 임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치자에게 즉시 계약해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임주후 폐업, 이진등으로 아파트형 공장에서 퇴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대공장은 설치자에게 반납하고, 분양공장은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예비전정업체 혹은 분양당시 임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시장(구청장, 도시개발공사 포함)이 건설공급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공급방법, 공급가격, 관리등에 대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관기관 관계관으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공장설치자
2. 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지회)
3. 대한상공회의소(서울상공회의소)
4. 중소기업진흥공단
5. 공장소재지 구청
6. 시공사 대표, 기타 설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하는 기관의 관계관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주관부서의 담당국장(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시장"을 말한다)이 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리자의 임무등) ①고시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

시제2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임무와 기타 공동주택 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입주업체 가동현황을 분기별로 매분기말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분기말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일반공장과 구별되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등용 관리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①관리자는 고시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타 안전관리 시설 및 정기정산 기간은 공동주택 관리규칙 제3조의 안전관리 시설 및 기간을 준용한다.

제11조(하자보수) 하자보수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의 범위를 준용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의 금액 및 내용등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장기 수선계획) 관리자는 고시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에는 공장등건물의 도색과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8조에 규정된 주요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사항) 시장(구청장, 도시개발공사 포함)이 설치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사업추진은 당해 목적사업 추진 주무부서에서 주관하며, 주무부서는 설치부처 및 어산의 확보, 설계, 시공, 분양(임대), 관리운영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계유관 부서에서는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아파트형 공장설치 완료보고서

보 고 인	상 호		주 민 등 록	
	대 표 자 이 름		번 호	
보 고 내 용	주 소 (법인주소제지)			
	공 장 소 제 지			
	공 장 의 업 종 (업종의 다수일때는 별지가함)	분 류 번 호		
	공장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생산시설면적(㎡)	환경시설면적(㎡)		
	작 공 일	준 공 일		

공업배치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설치의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인

(인)

(구 청 장)

귀 하

구 비 서 류 :

1. 건축법상 건축준공검사서
2. 건축배치도

아파트형공장등록관리대장										
업주입재현황										
아파트형공장현황	등록	상호	대표자	업종 (주생산 품목)	공장면적 (㎡)	생산 시설 면적 (㎡)	공장 위치 (호수)	사업 개시 일	총업 원수	전화 번호
명칭										
설치자										
소재지										
건축부지면적										
건축면적										
관리책임자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고 시

- 다 음 -

●서울특별시고시제30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허가고시

1. 한국도로공사 공고 제7호('90. 7. 25)로 공람공고 한바 있는 신월-부평간 고속도로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서 건설하는 도시계획사업(도로)의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기 동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건설2부)와 수도권 고속도로 건설사업소 및 양청구청(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9. 7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신월-부평간중 양천구 신월동 330-5 산79의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 명칭: 경인고속도로 신월-부평간 8차선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 고속도로 확장: 폭 20.4m→36m, 연장 = 500m(서울특별시 구간)

라.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허가일-1992. 12. 31까지

바. 수용되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인의 관리명세: 별첨

사.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자의 의권리	
1	329-3	답	365	298	전병호	서울성북구정릉동 820-14				
2	328-4	"	966	247	이진순	서울양천구신월동201-9				
3	328-3	"	288	90	이은애외1인	서울동작구대방동 44-78				
4	326-1	"	2,319	227	정연수의1인	서울동작구노량진동 84-39				
5	325-1	"	2,332	122	정연신의1인	서울강서구화곡동 1004 양서 A 8동 109호				
6	323-4	"	384	8	박창욱	서울성동구도선동 256-5				
7	322-5	"	245	14	이강해외4인	서울강서구화곡동 산16-20				
8	321-3	전	695	53	서울시					
9	308-1	수	5,359	62	서울시					
10	330-5	전	3,009	408	이준호외5인	서울강동명일 54 한양 A 2동 801호				
11	329-2	도	216	99	국유지					
12	330-4	답	653	250	전병훈	서울성북구정릉동 820-14				
13	332-4	"	1,909	241	오세영	서울서대문구충정로 3가3-41				
14	332-3	"	1,057	110	김봉록	서울 강동구방이동 340 반도 A 105동 1108				

21-6

제1513호 시

본 1590.9.10

1346

일련 번호	소 지 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지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의 권리	
15	333-1	답	1,206	420	정연수의1인	서울동작구노랑전동84-39				
16	334	전	625	108	김 태 영	서울영등포구당산동3가41				
17	336	답	516	109	박 창 욱	서울성동구도선동256-5				
18	314-1	수	862	351	국 유 지	미 등 기				
19	322-4	답	142	142	경 석 현	화곡동 산 16-21				
20	320-1	"	179	179	박 철 훈	성남시 신흥동 10 주공A 103동 106호				
21	319-1	"	136	136	유 해 득	서울양천구화곡동1027-8				
22	산 79-1	임	2,265	444	김 낙 원	서울 종로구 청운동 69				
계				4,081㎡						

물 건 조 서

번 호	소 재 지		불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면 적 (수 방)	소 유 자		비 고
	동	지 번				주 소	성 명	
1	서울신원	337	담 정	창 조 망	51	696-7621	이 수 형	
			"	목 재	2.6			
2	"	334-4	담 장	합 석	376.8	성 심 증 기	장 영 필	
			"	목 재	10.2	696-1121		
			과 상 인	"	1.5			

◎서울특별시고시제305호

1990년도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90년도 서울특별시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9. 10

서울특별시장고건

연번	회 계 별	예 산 액
	· 유류도로비	27,265,000천원
	· 의료보호기금	25,976,560천원
	· 병원사업	6,245,000천원
	· 통합공과금과징사업	26,948,000천원
	· 특정건축물정리비	2,000,000천원
	·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7,950,000천원
	· 교통방송사업비	4,980,000천원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504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에 동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0. 9.

서울특별시장

연번	회 계 별	예 산 액
1	○ 일반 회 계	2,100,499,534천원
2	○ 특 별 회 계	2,769,498,535천원
	· 수도사업	330,460,000천원
	· 하수처리장	107,094,000천원
	· 국민주택비	118,612,000천원
	· 도시개발사업비	1,211,650,290천원
	·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31,333,293천원
	· 주택재개발비	38,334,392천원
	· 지하철운수사업	658,291,000천원
	· 주차장시설비	41,729,000천원

인가일자	양도업종및 면호번호	양 도 업			양 수 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90. 9. 6	철물공사업 (인천11-23)	한철건영	영등포구 대림 862-3	홍성표	한철건영(주)	영등포구 대림862-3	남명추 홍성표

◎서울특별시공고제505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에 동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0. 9

서울특별시장

인가일자	양도업종및 면호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90. 9. 6	설비공사업 (서울82-12-151)	명진기업	영등포구대림동 990-1	이명기	(주)명진설비	영등포구 대림동 990-1	이명기

구 고 시

●양천구고시제23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지적승인

서울특별시고시제488호(89. 11. 13)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 조례 제5조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9. 7
양 천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모	비고
기정	학 교	양천구 신정동 산 14-2일대	12,535.50㎡	
변경	"	"	12,345㎡ (감)150.5㎡	

나. 도 명 : 생 략

토 지 조 시

일련 번호	소액 지 지 번	지목	지 력	면 적	실재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고 고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관리종류내용	
1	양천구 신정동 산 37-1	임야	114	114	임야	안상일 외7명	강동구 신천동 7 장마 A 13동 1405호	(주) 인천시 제일 방직	인천시 중 구 학익동 430-2	근저당 20,000,000	
2	산37-85	"	487	487	"	"	"	이기우	도봉구 월계동 430-8	근저당 5,000,000	
3	산41-3	"	3,327	3,327	"	유봉길	양천구 목동 901 목동 신사가지 A 209동303호				
4	산44-6	"	4,547	4,547	"	이재곤 외18명	종로구 혜화동 63-50				
5	산44-9	"	243	243	"	유봉길	양천구 목동 902 목동 신사가지 A 209동303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면적	입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외 권리종류및내용	
6	산 44-11	임야	3,326	3,326	임야	이재곤 외18명	종로해화동 63-50				
7	653-1	대	278	179	공장	양희성	경남울산시 야음동 789-1	(주) 중구 조흥 은행	남대 문로 1가 14	근저당 39,000,000	
8	653-2	도로	50	20	임야	국유지					
9	654-1	대	407	185	주택	김종권	영등포구 대림동 740-7				
10	851-3	도로	3,676	73	임야	국유지					
11	1152-37	대	44	44	"	서울 특별시					
	계		16,499	12,545							

●구로구고시제57호

- 다 음 -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142호(89. 3. 23)로 고시한 도시계획사업(도로및 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변경인가를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및 건물외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7.

구로구청장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42. 25-14501(변동없음)
2. 사업의 종류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구로구청-보성운수간 도로 개설공사(변동없음)
3. 사업규모: 도로 B=35M, C=140M(변동없음)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변동없음)
5. 사업확수및 준공예정일:
당초: 89. 3. 23-89. 12. 31
변경: 89. 3. 23-90. 12. 31
6.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구분	소재지번	기록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	구로동 144-19 대		182	구로동144-11	김병렬 외4인	강남외항전전면 곡안리 133	이상보
변경	구로동 144-19 대		182	구로동144-11 구로동144-11 구로동144-11 구로동144-11 관악구신림동 298-4	김병렬 김갑순 홍순오 김숙경 김성 조덕재	서울특별시 지방법원 남부지원	

7.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상기사항의 변경 없음.

●구로구고시제59호

도시계획사업(도모및 하수도실시 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제111호(89. 11. 22)로 고시한 도시계획사업(도로및 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 위법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및 건물 소유자와 이

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8.

구로구청장

- 다 음 -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424. 2-시흥동산 71.3(변경없음)
- 나. 사업종류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및 하수도): 시흥동 932번지구변 도로개설 공사의 3개소 도로포장 공사(변경없음)
- 다. 사업규모: 도로포장 B=6^m, L=100^m 하수도(φ 600), L=100^m (변경없음)
- 라. 사업시행자: 당초--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변경--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마. 사업의 준공예정일: 90. 12. 31
- 바. 사업토는 수용할 토지: 별첨토지및 건물조서(변경없음)

사.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명: 아래 사항의 변경없음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 소재지: 구로구 시흥동 산71-54

변 경 진				변 경 후		
연번	소재지번	소 유 자		소재지번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산 71-54	강동구 가락동 1-2 가락3차현대33-1303	김 춘 성	좌 동	좌 동	좌 동
2	424-10	"	김 춘 성	"	"	"
3	-4	시흥동 932-25	송 형 섭 의 1 인	"	"	송형섭
4	-11	은평구갈현동454-26	김 춘 성 의 1 인	"	"	좌 동
5	산 71-53	강동구 가락동 1-2 가락3차현대33-1303	김 춘 성	"	"	"
6	-52	용산구 이촌동 203-2 부산남구광안동 688-25	손 이 완 김 부 곤	"	"	"
7	932-41	구로구 가리봉동 152-18	최 학 범	"	"	"

구 공 고

●강남구공고제67호

주택자재생산업자등록취소공고

○ 주택건설 촉진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자재생산업등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990. 9.
강 남 구 청 장

등 록 취 소 업 소 명 단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계 지	말소일자	말소사유	비고
20-5	미 팽 기 업	윤 석 남	포이동 164-12, 13	90. 9	무단전탈	

사 업 소 고 시

하천의짐용허가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25호

하천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9.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허가년 월 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1990. 9. 4	영등포구여의도동 85-1번지선 송파구잠실동19번지 정동구성수2가 140-2번지선	하천	91.8㎡ 여의도30.6㎡ 잠실 30.6* 독섬30.6*	이동식음식 점 설 치	1990.9.7 ~1991.9.6	인천시 북구 십정동558-10	(주)새도 유병연 대리인 상서구등촌동 515-44 한형주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26호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9. 6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허가년 월 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90.9.6	영등포구여의도동 85-1 송파구잠실동 19 정동구성수2가130	하천	181.5㎡ 여의도60.56㎡ 잠실 60.56* 독섬 60.56*	이동식음식 점 설 치	'90.9.13 -'90.9.12	인천직할시남동구 만수동산 1-2	(주)원광 류복수 대리인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36 장섭운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27호
하천의 점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9. 7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허가년 월 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90.9.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지구앞한강	하천	36㎡	지하철5호선 설계제반조사	'90.3.31- 9.30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12-3	(주)대우엔지 이영환 주 영 욱

여 행 자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국제교류과	지방행정 주 사	우정훈	북 경	90. 9. 18 ~9. 26 (9일간)	시 비	제 11회 북경아시아 대회 참가
생활체육과	서 기 관	김건진	"	90. 9. 20 ~ 9. 28 (9일간)	서울시 체육회 부 담	제11회 북경아주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 연구 관	박상현	L. A 신서대터	90. 9. 12 ~9. 26 (15일간)	파학기술처 부 담	환경 공해검사를 위한 해외 연수
"	"	김민영	"	"	"	"

공무국의 여행명령 변경통보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소 속	문화관광국	국제교류과	
직 명	부 이 사 관	지방행정주사	
성 명	도 명 정	신 현 봉	
여 행 국	북 경	과 동	
국 행 기 간	90. 9. 21~9. 26(6일간)	"	
여 행 경 비	시 비	"	

서울특별시장

상수도사업본부사령

©1990년 9월 3일자

6급이하 지방기업행정직 면직

령 제104호

연 번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현 격 급
1	백 은 미	원예의하여 그직을 면함	강동수도사업소	지방기업행정서기보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강 철 수 (姜 喆 洙)		소 속	성동구 주재파
	본 적				직 명
사 항	주 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번지 19			
	주 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3-42			
출석 이유		심문 및 진술			
출석 일시		1990년 9월 25일 14시 00분			
출석 장소		서울시청 기획상황실			
유의 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0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강 철 수 귀하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명
	본 적				
사 항	주 소				
	주 소				
199 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 년 월 일 성 명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함	성 명	이 제 용 (李 濟 龍)	소 속 직 명
	본 적	아동병원 서무과 지방조무원	
사 함	주 소	충북 괴산군 호수면 호암리 555	
	주 소	인천직할시 남구 승의4동 248-171	
출 석 이 유		심문 및 진술	
출 석 일 시		1990년 9월 25일 14시 00분	
출 석 장 소		서울시청 기획상황실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0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이 제 용 귀하			
-----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함	성 명		소 속
	본 적		직 명
사 함	주 소		
	주 소		
199 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 년 월 일 성 명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홍 흥 렬 (洪興烈)	소 속	아동병원 서무과
	본 적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3의 1호	직 명	지방조무원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동3동 32-8			
출 석 이 유	심문 및 진술			
출 석 일 시	1990년 9월 25일 14시 00분			
출 석 장 소	서울시청 기획상황실			

- 유의 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0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

홍 흥 렬 귀하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명	
	본 적					
	주 소					

199 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 년 월 일

성 명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함	성 명	노 태 숙 (魯 泰 塾)	소 속 직 명
	본 격	용산구 총무과 지방방병원	
	주 소	전북 고창군 성내면 양계리 504 서울 동작구 사당동 64-97	
출 석 이 유		심문 및 진술	
출 석 일 시		1990년 9월 25일 14시 00분	
출 석 장 소		서울시청 기획상황실	
유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위장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0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노 태 숙 귀하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함	성 명		소 속
	본 격		직 명
	주 소		
199 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 년 월 일 성 명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